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0-322호

정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3호, 2018.5.24.)되어 승인 취소된 정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 가.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 정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나. 신 청 인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한철희
- 다. 신청금액 : 금38,004,000원
- 라. 신 청 일 : 2020.02.20.

2. 지급계획

- 가. 지급(예정)금액 : 금38,004,000원
- 나. 업무항목별 세부 지급 내역

(단위 : 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인 건 비	24,734,075	복리후생비	951,335
일반운영비	4,331,861	세무회계	4,620,000
제세공과금	952,672	기타사업비	2,100,000
업무추진비	315,000		
합 계		38,004,000원(천단위절사)	

- 다. 지급대상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한철희
- 라. 지급방법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한철희 통장으로 계좌이체
- 마. 지급(예정)일자 : 지급계획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 바.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
- 사. 공고기간 : 2020.02.27. ~ 2020.03.12.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26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 (안 제6조)
- 나.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
-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2241-4054, FAX: 2241-6579, E-mail: yww0911@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

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현행	개정안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

현행	개정안
	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 제8조 (생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26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 및 신설된 영세납세자에 대한 대리인 선정제도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명칭변경 (안 제4조, 안 제11조)
- 나. 선정대리인을 신청서 서식 신설 (안 제12조)
- 다.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서식 신설 (안 제13조)
- 라.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기록·관리 서식 신설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2241-4054, FAX: 2241-6579, E-mail: yww0911@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본,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본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제활용품))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
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1 2010 2009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관인생략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 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지방세 정보통신망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 지 방 세 정보통신망 -----
<신 설>	제1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신 설>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27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허용되어 그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지방소비세가 구세로 신설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허용되어 이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3조)

나.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 신설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18.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2241-4054, FAX: 2241-6579, E-mail: yww0911@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를
“부과부서의 장은”으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하는”을
“처리한”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4장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 기간)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

월별	국세청 납입액	국세청 납입일	안분기준	안분액	납입액	납입일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27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체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감면 위임조항을 우리구 감면 조례에 반영 신설 (안 제5조제2항)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해당 법 조문 조례에 반영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2241-4054, FAX: 2241-6579, E-mail: yww0911@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

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현행	개정안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 - 29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2020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이해충돌 가능성)에 따라 발전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 시책개발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현행 시행규칙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 및 별지 양식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비효율 및 실무와의 불일치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발전위원회 위원수 개정(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 -----법 제17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

나. 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신설(안 제2조제3항)

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우대사항 구체화 및 제목변경(안 제6조)

라. 자원봉사증 발급 기준 명시(안 제6조제2항)

마. 봉사활동 경비지원 지급기준 신설(안 제7조)

바.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발급·관리 등 현행화(안 제9조)

사. 법령 정비에 따른 제출서류 변경 및 삭제(안 제10조)

아. 기타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2241-2364, FAX: 6526-6527 E-mail : 201303055@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임 할”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에 대해서”를 “위원회에”로,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정감 부여)”를 “(자원봉사자 우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을 “자원봉사자에게”로, “자에 대하여는 인증 메달 등을 수여 할”을 “자에게는 인증메달, 상패, 감사장 수여 및 성북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적이”를 “실적이 자원봉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요 되는 재료비를 지원 할”을 “소요되는 재료비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2항 중 “활용”을 “활용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원봉사활동사항 증명서 등 발급)”을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등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자 수첩에 기록하고,”를 “공식적인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로 한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제7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성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2. 성북구 또는 성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	· 교 통 비 : 5,000원 이내 · 급 식 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 활동용품비 등

현행	개정안
제2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2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 ----- ----- ----- ----- ----- 10 명 ----- ----- ----- ----- -----.
② 위원은 담당과장 및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국장-----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원봉사업무에 식견과 경험 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 인정되는 사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그 밖에 -----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②·③ (생략)	제3조(위원회 회의) ① ----- ----- 연 1회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③ (현행과 같음) ④ ----- 위 원에게----- 지급할 -----.
제4조(위원의 해촉)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 그 밖의 -----
제5조(센터의 조직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	제5조(센터의 조직운영) ① ----- ----- ----- -----

는 경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인정감 부여) ① 센터에 등
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
공심을 갖도록 별표 1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메달 등을 수여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최근 1년간 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봉사활동 경비지원)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구에서 주관하거나 요청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 되는 재료비를

_____ “센
터장” _____

_____.

② _____ 센터장 _____

제6조(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 --
 --- 자원봉사자에게 -----

 ----- 자에
 게는 인증메달, 상패, 감사장 수
 여 및 성북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

② ----- 실적이 자원봉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봉사활동 경비지원) ① ---

----- 소요되는 재료를

----- 소요되는 재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보험가입) ① (생략)

② 보험 가입 대상자는 자원봉사시스템에 자원봉사 보험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를 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사항 증명서 등 발급) 자원봉사 활동기관에
서는 봉사활동사항을 자원봉사
자 수첩에 기록하고,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확
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
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자원봉사자 수첩 [별지 제4호
서식]

5. · 6. (생략)

지원할 -----.

②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보험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활용에 _____
_____.

제9조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등 발급) -----
----- 공식적인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
템에 입력·관리하고 -----
-----.

제10조(서식 및 대장 비치)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0-29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및 표지판의 형식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안 제2조)

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및 형식(안 제3조, 제5조)

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및 평가(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2241-3823, FAX : 2241-6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지원사업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제5조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형식

공사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를 선택하여 설치

2. 건설공사표지에 보조금지원 표기(예시)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0000-0000	
보조사업명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지원 표시 위치는 건설공사내용·현장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제5조 관련)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채
가로 : 30cm 이상 세로 : 30cm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지방보조금액	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사업기간	20 . . . ~ 20 . . .

□ 표지판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설치일자		
위치		
종류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격		
재질		
글씨채		
내용		

※ 붙임 : 현장사진 1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	표지판 종류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한	비고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지방보조금액	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사업기간	20 . . . ~ 20 . . .

□ 표지판 설치

표지판종류	
설치일자	
위치	
규격	
재질	
글씨체	
< 변경사항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3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 1. 9.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제공된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혜택이 2020. 7. 9.자로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감면내용 삭제(제3조제2항제3호)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 내용 전면 수정(제4조)

다. 그 밖에 일부 조항 자구 수정(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2241-4304, FAX: 2241-6586, E-mail: hg1@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을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타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 진입 및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한 정산방법으로 징수한다.

1. 행사 또는 회의 참석 등 부서 업무와 관련된 차량의 경우 해당부서는 사전에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교부받은 주차권으로 정산한다.

2. 월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전월 말일 전에 주차요금을 선불로 징수하고, 그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환불은 아니 된다.

3. 월 정기권 발행대상은 청사에 상근하는 직원 및 입주업체(또는 기관) 직원으로 한다.

제5조 중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여”를 “일일 결산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장기방치된 차량이 발행한 경우는 견인차량을 이용”을 “장기간 방치된 차량 발생 시, 해당 차량을”으로, “이동시키며”를 “이동시키고”로, “견인료와”를 “차량 견인료 및”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않음으로 인해”를 “않아”로 한다.

제11조 중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 7. 9.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u>관하여 필요</u> 한 사항을 규정하여 <u>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필요</u> ----- <u>효율적으로</u> <u>주차장을 관리하도록</u> ----- -----.
제2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생략) 1. ~ 4. (생략) 5. 그 밖에 <u>기타 구청장이 필요</u> 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2조(주차요금 징수대상)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u>구청장</u> ----- -----
제3조(주차요금)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u>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30% 감면</u> 4. (생략)	제3조(주차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차량 입차시 출입구에 발권기에서 주차권을 발급하고 차량이 나갈 때 교부한 주차권을 요금계산기에 의거 주차요금을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 진입 및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의한 정산 방법으로 징수한다. 1. 행사 또는 회의 참석 등 부서업무와 관련된 차량의 경우 해당 부서는 사전에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때 면제차량은 별표1의 주차 면제확인서를 징구하고 출차시 킨다. 2. 월 정기권을 발급받아 주차 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유효 기간을매월 1일부터 말일까 지이며 환불은 아니된다. 3. 월 정기권 발행대상은 청사 에 상근하는 직원으로 한다.	하며, 이 때 교부받은 주차권 으로 정산한다. 2. 월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전월 말일 전에 주차요 금을 선불로 징수하고 그 유효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로 하며 환불은 아니 된 다. 3. 월 정기권 발행대상은 청사 에 상근하는 직원 및 입주업 체(또는 기관) 직원으로 한다.
제5조(징수된 요금관리) 수납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을 일일결 산하여 다음날 은행에 납입하여 야 한다.	제5조(징수된 요금관리) ----- ----- 일일 결산하여 ---- ----- -----.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장기방치된 차량이 발행한 경우는 견인차량을 이용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 사유 없이 ----- 장기간 방치된 차량 발생 시, 해당 차량을 ----- 이동시키고, -----차량 견인료 및 -----.
제7조(손해배상책임) ① (생 략) ② 관리인이 선량한 책임자로서 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 로 인해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아 ----- -----.

제11조(준용) 주차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 ----- ----- 사항은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 - 3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 범위 지정(안 제5조)
- 나. 계속점용 시 연간 점용료 증가폭 제한(안 제6조)
- 다. 점용료 등의 징수를 금하는 소액의 기준 수정(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전화: 2241-4014, FAX: 2241-6553 E-mail : 2017011735@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점용한**”을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1년이**

상”을 “1년 이상”으로,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도이상”을 “연도 이상”으로,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영 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납부기한내”를 “납부기한 내”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5,000원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점용료중”을 “점용료 중”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2호 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68조를”을 “법 제68조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 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 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한다.	① ----- ----- ----- ----- ----- ----- -----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 ·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 · 징수한다.	③ ----- 1년 미만----- ----- ----- 1년 이상----- ----- ----- 개시 후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

②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
-----.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 연도 이상 -----

----- 100분의 10 -----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 납부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삭

-----.

-----.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1만원 미만 -----

-----.

② ----- 어느 하나 -----

----- 점용료 중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	
②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 제2호가목----- -----.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 법 제68조를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0-31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천장산우화극장, 문화공간 이육사 및 성북역사문화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문화예술시설 명칭 추가 및 정비 (안 별표1)
- 나.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추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정비 (안 별표2)

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241-2655, FAX: 2241-6536, E-mail : chiwiss@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 또는”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자료”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 위탁하는”을 “재위탁하는”으로, “30일 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관련되어”를 “관련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해당연도 마다”를 각각 “해당연도마다”로, 같은 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5일 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2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의 성북예향재(藝香齋)란 다음에 천장산 우화극장란, 문화공간 이육사란, 성북역사문화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성북예술창작센터란은 삭제한다.

천장산 우화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상월곡동 24-348)
문화공간 이육사	전시장,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종암동 65-13)
성북역사 문화센터	전시장, 교육장, 관광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1길 31 (성북동 119-5)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기능 및 위치(제3조와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77 (돈암동 51-49외)
동행(東幸)라운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47 코아루센타시아 내 북층 (129호, 226호) (동선동1가 121-6)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00-1(석관동 261-125)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16-27 (동선동4가 190)
성북 예향재(藝香齋)	전시장, 문화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97 (성북동 226-37)
천장산 우화극장	공연장, 세미나, 영화상영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지하1층 (상월곡동 24-348)
문화공간 이육사	전시장,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종암동 65-13)
성북역사 문화센터	전시장, 교육장, 관광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1길 31 (성북동 119-5)

[별표 2]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제18조와 관련)

1.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 (2) 준비(연습)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5) 22시 이후 철수는 준비(연습)대관료를 시간으로 나눈 비용의 200퍼센트를 적용한다.
- (6)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
- (7)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 (8) 부지가액 및 건물가액 사용요율은 5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대관료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 기준/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행사	
공연장	오전 10:00~12:00(2시간)	28,000	56,000	부가세 포함
	오후 13:00~17:00(4시간)	56,000	112,000	
	저녁 18:00~22:00(4시간)	56,000	112,000	
	1일 10:00~22:00(10시간)	140,000	280,000	

다. 별도 대여 물품

구분	품 명	규 격	금액 (단위:원)	비고
영상	빔프로젝터	7,000 ansi	50,000	- 1일/1대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2.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3. 성북구 동네마당 뜰안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강의실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4. 성북 예향재(藝香齋)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로 하며 사용 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안채, 사랑채	1일 (09:00~18:00)	10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 천장산 우화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1일 대관가능 시간은 9시간(10:00~21:00)으로 한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2) 준비(연습)/철수 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3)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4) 비 문화예술 일반 행사 (방송, 영화, CF, 촬영, 녹음 등)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100퍼센트를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5) 빔프로젝트를 포함한 공연장비 대여료는 대관료에 포함한다.(부가세 포함)

(6) 대관기간 중 공연이 없는 주말·공휴일은 준비(연습)/철수 대관료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대관료

시설명	사용시간	사용료(사용시간기준 / 단위 : 원)		비고
		준비(연습)/철수	공연/행사	
공연장	1회 / 3시간	25,000	50,000	부가세 포함
	1일 / 9시간	70,000	150,000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6. 문화공간 이육사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교육장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7. 성북역사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 기준

: 대관 기본 단위를 1일 2시간으로 하며 대관 가능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한다.

(단, 점심시간은 대관에서 제외한다)

나. 사용 요금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고
교육장	1일 2시간 (09:00~18:00)	20,000원	

다. 문화강좌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1인 1강좌)	월 3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생 략) ② 운영책임자는 <u>구청장 또는</u> 수탁자가 임명하며 수탁자가 운 영책임자를 임명할 경우 구청장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서울특별시</u> <u>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u> <u>한다)</u> 또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문 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 명 이하----- ----- ----- ----- -- <u>사람으로</u>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의 위탁) ① <u>서울특별</u> <u>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u> <u>라 한다)</u> 은 문화예술시설의 보 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 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수탁 자”라 한다)에게 시설을 운영관 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u>구청장</u>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략)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 재위탁하는 ----- -- 30일 전-----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u>관련되어</u>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 <u>관련하여</u> -----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운영과 관련해 매 <u>해당연도</u>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 ----- -- <u>해당연도</u> 마다 ----- ----- -----.
② 수탁기관은 매 <u>해당연도</u> 마다 사업경과 후 구청장이 정한 <u>기한내</u> 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② ----- <u>해당연도</u> 마다 ----- ----- -- <u>기한</u> 내-----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8조(사용료 등) ① (생략)	제1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u>기타</u>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부	2. ----- <u>그 밖에</u> ----- ----- --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u>15일</u>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3. ----- <u>15일</u> 전----- -----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u>사항에</u> 대하여는 관계법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 ----- <u>사항은</u>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0-3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명칭에 맞도록 띄어쓰기 수정(제명, 안 제1조)
- 나.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안 제3조, 안 별표1)
- 다. 전시 성격에 따른 관람료 규정 세분화(안 제6조)
- 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변경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24조)

마.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2241-2655, FAX: 2241-6536, E-mail : chiwiss@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북구립 미술관”을 “성북구립미술관”으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제1호 중 “미술관”을 “성북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용하는”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주 월요일

제5조 본문 중 “9시”를 “10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관람료 및 관람권)”을 “(관람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설전 및 소장품 전시는 무료로 한다.

2. 기획전 등 특별전 관람료는 제24조제4호에 따라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한다.

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제10조제1항 중 “및 일부시설”을 “또는 일부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3조에 따른 성북구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자로부터”를 “작품 소장자가”, “등 신청이 있을”을 “등을 신청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관리”를 “운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료”를 “소장품, 도록, 서적, 사진, CD 등을 포함하는 소장자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학술상**”을 “**학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 구청장이**”로, “**구청장이 인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제11조제2항의**”를 “**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보험을**”을 “**보험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작품 불용결정**)”을 “(**소장품 불용결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안녕질서**”를 “**질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로 하고, “**사용일 10일 전**”을 “**대관 개시일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일**”을 “**개시 1일 전**”으로 한다.

제19조 중 “**사용중지와 기간**”을 “**사용을 중지하고 대관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의**”를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거나,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계공무원
4. 위탁 및 대행사업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 운영의 심의·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초대전**”을 “**기획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 전이라도**”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운영**)”을 “(**회의**)”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술관 관람료**”를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기능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 성북로 134	한국 근현대 미술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구 솔샘로 15다길 35	조각가 최만린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성북구 화랑로 18자길 13	어린이 전문 미술관
성북예술창작터	성북구 성북로 23	대관 및 청년작가 지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u>조례</u>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성북구립미술관----- ----- 규 정하여 ----- -----.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46번지에 둔다.	<삭 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생 략) 3.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성북구립미술관 (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 -----. 2. (현행과 같음) 3. ----- --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 4. 5.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1. (생략)	제4조(개관 및 휴관) ----- -----.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3. (생략)	2. 매주 월요일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미술관의 자체 전시작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 ----- 10시 ----- -----.
② (생략)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③ 관람권의 가격, 발행방법 등	1. 상설전 및 소장품 전시는 무료로 한다
	2. 기획전 등 특별전 관람료는 제24조제4호에 따라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 ----- -----.
제7조(관람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6.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 가족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신 설>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신 설>	9. (현행 제7호와 같음)
7. (생략)	제8조(관람의 금지) ----- -----.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1. 정신질환자	2. <삭 제>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4. (현행과 같음)
3. 4. (생략)	제9조(행위의 제한) ① ----- ----- -----.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신 설>	

안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 사람에게 -----.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및 일부 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
----- 또는 일부
시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품 수집) ① 구청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북구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 수집) ① -----
----- 위원회-----.

②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이나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 작품
소장자가 -----
-- 등을 신청할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장품의 이용) ① 구청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

제12조(소장품의 이용) ① -----
----- 운

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영관리-----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소장품, 도록, 서적, 사진, CD 등을 포함하는 소장자료----- 학술 -----.

제13조(소장품의 대여) ① 구청장은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소장품의 대여) 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 인정하는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제11조제2항의 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 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제11조 제2항에 따른 -----
--- 보험에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작품 불용결정) ①·② (생략)

제14조(소장품 불용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제16조(대관허가 제한)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4. (생략)

제17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9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전시설 등의 사용중지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생략)

② 대관자가 제21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

-----.

1. ----- 질서 -----

--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 개시일 10일 전 -----

----- 개시 1일 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대관허가의 중지 및 변경)

----- 사용을 중지하고 대

관기간-----.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1조제1항에 따

른 -----

-----.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

----- 위

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거나,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성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위탁 및 대행사업 관계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 한다.

1. ~ 3. (생략)

4. 초대전 등 특별전 개최 시 입장료 징수 여부 및 입장요금

5. (생략)

제25조(임기 및 위·해촉) ① (생략)

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계공무원

4. 위탁 및 대행사업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관 운영의 심의·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능) -----

----- 심의·자문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기획전 -----

5. (현행과 같음)

제25조(임기 및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7조(운영) ①·② (생략)

② -----

----- 입기 전이라도 -----
-----.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 - 32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서식을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서 별지 제24호서식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7조의 상세내용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2조를 삭제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전화: 2241-4014, FAX: 2241-6553 E-mail : 2017011735@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성북구청장”을 “성북구청장”으로, “한다) 에게”를 “한다) 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점용허가”를 “점용허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물·공작물·경작물 기타”를 “건물·공작물·경작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작성 비치한다”를 “작성·비치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상당기간동안”을 “각 호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손상 하였**”을 “**손상하였**”으로 한다.

제10조 후단 중 “**인정할때**”를 “**인정할 때**”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취소 (변경) 통지서에 의하**
여”를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4 전단 중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의한**”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로 한다.

제10조의5제1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제기 할**”을 “**제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6 중 “**사항등**”을 “**사항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성북구청장 ----- 한다)에게 -----.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 ----- ----- -----.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허가신청서 접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 ----- 2명 ----- -----

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공작물·경작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인에게 우선 허가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기간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2. 3.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 . -----
----- 건물·공작물·경작물 및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허가증) -----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 별지 제3호 -----
----- 서식에 따른 -----
-- 작성·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
----- 「도로법 시행령」 -----
-----.

② -----
--- 각 호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2. 3.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

제9조(도로손상) ① -----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 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① 삭 제

② (생 략)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 손상 -----
하였-----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

----- 인정할 때-----
-----.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② (현행과 같음)

③ -----
----- 30일 이 -----
내----- 기간 내-----

----- 15일 이내-----

-----.

④ -----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u>취소</u> (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의견진술) 제10조의4 (의견진술)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 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의5(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 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 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 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 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 <u>취소</u> (변경) 통지서에 따라 ----- -----. 제10조의4(의견진술) ----- ----- ----- ----- -----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 -----. ----- ----- -----. 제10조의5(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 ----- ----- 30일 이내----- ----- ----- 제기할 -----. ② ----- 따른 ----- ----- ----- ----- ----- ----- -----.
---	--

제10조의6(과태료 수납부의 비치 ·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 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 다.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7 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타 구 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등을 말 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 건물 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 결정한자 자로 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때 3. 기타 구정상 점용료의 감면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 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 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	제10조의6(과태료 수납부의 비치 · 관리) ----- ----- 사항 등----- ----- -----. <삭 제>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① ----- ----- 따른 ----- ----- ----- -----
--	--

외하고는 다음 기분 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0-3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명확화하여 포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조례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조례해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명확화(안 제6조2)

- 기존 : 국가보훈대상자
- 개정 :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위문금 지급대상자 명확화(안 제6조의4)

- 기존 : 국가보훈대상자
- 개정 :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2241-2306, FAX: 6526-6527 E-mail : yangjh@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국가보훈대상자</u> 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u>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u> ----- ----- ----- ----- -----.
제6조의4(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u>국가보훈대상자</u> 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4(위문금 지급) ① ----- <u>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u>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32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
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

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
 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에 신설된 감면 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안 제2조 별표1)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전화: 2241-3485, FAX: 2241-6560, E-mail: yaanan21@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구역에 대하여는”을 “조사구역을”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에 대하여는”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을 “주차요금을 사전에 납부한”으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을 “주차요금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위치안내표지판”을 “위치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21조 중 “1/10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3%”를 “3퍼센트”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부분에 대해서는”을 “부분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사항에 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u>조사구역에 대하여는</u>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 ----- ----- ----- ----- ----- ----- <u>조사구역을</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② (생략)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u>30이상</u>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	③ ----- ----- ----- <u>30이상</u> ----- ----- -----.

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
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
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
다.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②
(생략)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
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

-----.

제7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차장은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주차요금을 사
전에 납부한 -----

----- 주차요금은 -----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치안내표지판-----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
한 부설주차장 규모) -----

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
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해당 시
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
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
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
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
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
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
장, 구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
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
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
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
용한다.

----- 10퍼센트 이상--.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의 설치 기준 등) ① -----

----- 3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
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분은 -----

-----.

- | | |
|--|--|
| 제24조(용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생략) | 제24조(용자 및 보조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 ② 용자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용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 사항은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2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150,000	80,000	400	150,000	80,000
2급지	250	4,000	100,000	50,000	250	100,000	50,000
3급지	150	3,000	80,000	40,000	150	8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3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3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상한선은 1일 1만원으로 한다. 단 할인혜택 차량의 경우 당일 발생한 총 시간 주차요금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정수한다.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 구청장이 주차수요억제 등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
 - 5급지
 -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2) 1~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로서 의사자증을 제시한 경우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6.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8.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9.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월 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3. 성북구 자원봉사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자원봉사증을 지참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나. 자원봉사증을 미지참한 사람 및 자원봉사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영수증 등 증빙자료(당일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다동이 행복카드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16.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하는 이용자에게는 주차장 이용 시 한 차례만 요금을 할인하되, 할인요금은 2,000원까지로 한다.(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0-3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구가 운용하는 공용청사건립기금은 구·동·구의회 청사 등의 건립에 사용되는 한정된 재원이기에 해당 기금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 건립·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용청사건립기금 조문의 제목 및 내용 개정(안 제13조)
- 나. 공공시설의 범위 설정 및 건립재원 마련(안 제13조제1항)
- 다. 기금재원 조성 내용 개정(안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및 제5호)
- 라. 기금의 용도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마.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2241-3825, FAX : 2241-6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을 “존치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영제7조”를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용 관리하기”를 “운용·관리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4인”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기금에 대하여는”을 “기금은”으로, “이자율에 의하되”를 “이자율을 따르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공공시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제13조제2항제4호 중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을 “기금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5.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30조 중 “경비에 관하여”를 “경비”로 한다.

제31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3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2	체육진흥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3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법정
4	자활기금	2021.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임의
5	노인복지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6	양성평등기금	2021.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임의
7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8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0	재활용품매대금관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1	도로굴착복구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2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법정
13	한옥보전지원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4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5	사회투자기금	2020.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6	아동기금	2021.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17	장애인체육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42조	임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u>의하여</u>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같은 법 ----- 따라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구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 38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 -----.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본법 제4조에 <u>의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 따른 ----- ----- 준 치가 필요한 -----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 -----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
제7조(설치 및 운용) ① (생략) ② 통합관리기금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	제7조(설치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3. 기타 수익금	제8조(재원)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9조(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2. (생략) 3. 기타 지방채 상환	제9조(용도)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 3. (생략) 4. 영 제8조의 규정에 <u>의한</u> 통합관리기금의 성과분석 5.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운용·관리하기 ----- ----- --. ② -----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따른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인과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인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 ⑤·⑥ (생략)
-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관리)

-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과 관련자료를 기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율 등) 위탁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국공채 및 적금 등의 이자율에 의하되 그 외 금융자산 등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

6. 그 밖에 -----
- ③ -----
- 12명 -----.
- ④ -----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1명-----
- 4명 -----.
- ⑤·⑥ (현행과 같음)
- ⑦ -----
- 위원에게-----.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관리)

- ① -----
- 따라 -----.
- ② ----- 따라 -----.

제12조(이자율 등) -----

기금은 -----

-- 이자율을 따르되 -----

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제13조(공용청사건립기금) ①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구세 및 세외 수입의 1%)
2. 공용·공공용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융자금
3. 삭 제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이전신축 포함)에 필요한 경비

-----.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각 호-----.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4. 기금운용-----

5. 그 밖의 수입금

③ ----- 각 호-----.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2.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건물신축에 소
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
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비

<신 설>

<신 설>

<신 설>

제30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
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
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
별시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
시 성북구 회계사무처리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등에 의거 정한 바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
련 부대경비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5.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30조(기금의 보조) -----
--- 경비-----

-----.

제31조(준용) -----
--- 사항은 -----

-----.

제32조(시행규칙) -----
필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3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
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
경(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 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 추가(제2조)
-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 특정성별이 10분의 6”으로

변경(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라.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변경(제5조제2항)

마. “동 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제8조)

바. 상위 법령에 따라 “동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며”를 “동 협의체 위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로 변경(제8조제3항)

사. 상위 법령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삭제(제12조제1항)

아. 조례 해석의 논란 방지를 위해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을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으로 변경(제12조제1항)

자. 조례 해석의 논란 방지를 위해 “ 동 협의체 위원”을 “ 동 협의체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변경(제12조제2항)

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을 “1. 대표협의체 : 분기별 1회”,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으로 변경(제15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2241-2315, FAX: 2241-6526, E-mail: choija27@s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eongbu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분의 2”를 “10분의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구청장·교육문화복지국장·보건소장”을 “부구청장·복지문화국장·보건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되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동 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 40명 이하”를 “이상으”로, “3분의 2”를 “10분의 6”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협의회 설치)”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 설치)”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을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때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 2회”를 “분기별 1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회”를 “6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의”를 “심의”으로, “통지하여야”를 “서면으로 알려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동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 ”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 (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체 기구) ----- ----- ----- ----- -----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 ----- -----.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대표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략) 5. 동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7. (생략) ②·③ (생략)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 ----- ----- 6.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u>3분의 2</u>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u>부구청장·교육문화복지국장·보건소장</u>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2. (생략)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생략) ③·④ (생략)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 ----- ----- ----- <u>10분의 6</u> ----- -----. ② ----- ----- ----- <u>부구청장·복지문화국장·보건소장</u> ----- ----- -----. 1. 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 <u>지원법</u> 」 제2 <u>조</u> -----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체) ① (생략)	제6조(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 ② 실무협의체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 ⑤ (생 략)
- 제7조(실무분과) ①·② (생 략)
-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8조(동 협의체) ①·② (생 략)
- ③ 동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3. (생 략)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생 략)
- ② -----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7조(실무분과)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위촉직 위원

-----.
-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이상으

----- 10분의 6 -----
-----.
1. -----
----- 사람
- 2.·3. (현행과 같음)
4. -----

- 사람
5. (현행과 같음)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④·⑤ (생 략)
- 제9조(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협의회 설치) ① ~ ④ (생 략)
-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한다.
- ②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생 략)
- 제14조(전담직원) ① (생 략)
- ② 전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 2.·3. (생 략)
- 제15조(회의 등) ① (생 략)
-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
6. -----

----- 사람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협의회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

----- 공무원 -----

-----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 ② ----- 위원(위원장 포함) -----
-----.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전담직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 2.·3. (현행과 같음)
- 제15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

인 사

《발령 제39호》 기간연장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박 혁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연장) (의 사) 에 임 함 보건소 건강정책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20.2.25 ~ 2021.2.24)	<< 기 간 연 장 >>	

(발령일자 : 2020. 2. 25.자)

《발령 제 40 호》 승진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강은주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여성가족과장에 보함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2	김한경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도시계획과장에 보함	도시계획과	지방행정주사
3	서병철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청소행정과장에 보함	청소행정과	지방행정주사
4	박윤숙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교육지원과장에 보함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주사
5	송문구	둔암제1동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둔암제1동장에 보함	둔암제1동	지방행정주사
6	김도영	안암동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안암동장에 보함	안 암 동	지방행정주사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7	이기영	중암동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중암동장에 보함	중 암 동	지방행정주사
8	김종환	월곡제1동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월곡제1동장에 보함	월 곡 제 1 동	지방행정주사
9	박종미	지 방 행 정 주 사 에 임 함	주택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10	조선미	지 방 행 정 주 사 에 임 함	치 수 과	지방행정주사보
11	서승대	지 방 행 정 주 사 에 임 함	주민공동체과	지방행정주사보
12	유혜영	지 방 행 정 주 사 에 임 함	행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13	정선영	지 방 행 정 주 사 에 임 함	행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14	정진환	지 방 행 정 주 사 에 임 함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15	이주연	지 방 행 정 주 사 에 임 함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보
16	이미정	지 방 행 정 주 사 에 임 함	삼 선 동	지방행정주사보
17	정선영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에 임 함	주택정책과	지방행정서기
18	김다현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에 임 함	교통지도과	지방행정서기
19	김연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에 임 함	재 무 과	지방행정서기
20	정서연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에 임 함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서기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21	채운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서기
22	윤제영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홍보전산과	지방행정서기
23	장일권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길음제2동	지방행정서기
24	김현아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보
25	조애림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재무과	지방행정서기보
26	최금란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주민공동체과	지방행정서기보
27	윤혜신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28	박다혜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교육지원과	지방행정서기보
29	김운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성북동	지방행정서기보
30	이호현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종암동	지방행정서기보

(2020. 2. 21.字)

《발령 제 41호》

連番	姓名	發令內容	現職	
			所屬	職級
1	남홍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적과	지방시설서기보시보 (지적)

(시행일자: 2020. 2. 24.字)

《발령 제 50 호》 휴직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박설희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육아)을 명함(연장) (2020.02.26. ~ 2020.06.30.)	행정국	지방사회복지서기

(2020. 2. 26. 字.)

